

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67
----------	-----

발의일자 : 2003년 10월 일

발 의 자 : 박용갑의원외 17인

1. 제안이유

-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에 투표용지에 직접 선출할 자의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으나
- 이로 인해 무기명 투표의 근본취지(목적)인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와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무효투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표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
- 누구를 선택하였는지 식별이 곤란한 투표지에 대한 무효여부의 판단은 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” 제179조(무효투표)의 규정을 준용하는 등 투표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.
- 아울러 의안의 상정은 『“집회공고일이전”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』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안의 검토기일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“집회공고일 이전”을 “집회일 10일전까지”로 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
- 시정질문요지서의 집행기관 도달시기가 늦어도 “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”로 규정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를 늦어도 “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”로 개정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“○”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효투표의 판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함(안 제8조제5항).
- 의안의 상정은 “집회일 10일전”까지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함(안 제57조의2).
- 의장은 시정질문요지서를 늦어도 “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”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함(안 제73조의2 제7항).

3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3조(회의규칙)
- 대전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17조(제출기일)

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제1항 선거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"○"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(무효투표)를 준용한다.

제57조의2중 “집회공고일이전”을 “집회일 10일전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2 제7항중 “질문시간 24시간전”을 “질문시간 48시간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03. 11.

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대 전 광 역 시 의 회
운 영 위 원 회

심 사 보 고 서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0. 17. 박용갑 의원의 17인
2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28
3. 상 정 일 자 : 제1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
 - 제1차 운영위원회 (2003. 11. 7) :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·의결

II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용갑 의원)

-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에 투표용지에 직접 선출할 자의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으나
- 이로 인해 무기명 투표의 근본취지(목적)인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와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무효투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표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
- 누구를 선택하였는지 식별이 곤란한 투표지에 대한 무효여부의 판단은 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” 제179조(무효투표)의 규정을 준용하는등 투표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.
- 아울러 의안의 상정은 『“집회공고일이전”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

으로 한다』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안의 검토기일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“집회공고일 이전”을 “집회일 10일전까지”로 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

- 시정질문요지서의 집행기관 도달시기가 늦어도 “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”로 규정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를 늦어도 “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”로 개정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.

■ 주요골자

-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“○”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효투표의 판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함 (안 제8조제5항).
- 의안의 상정은 “집회일 10일전”까지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함 (안 제57조의2).
- 의장은 시정질문요지서를 늦어도 “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”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함(안 제73조의2 제7항).

III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안문환)

- 본 규칙개정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 무기명 투표의 근본 취지인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무효투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새로히 신설하면서,
- 각종 제출된 의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의안의 상정시점을

“집회공고일 이전”을 “집회일 10일전까지”로 하고, 시정질문 요지서 도달시점을 현행 “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”를 “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”로 개정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.

- 본 규칙개정안은 국회 및 타 시·도 의회에서도 상기안과 같이 개정, 또는 개정되어 가는 추세이며, 투표방법의 투명성 확보, 충분한 의안심사,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 등을 위한 사안으로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 의 및 토 론 요 지 : 생 략

V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(내용별첨)

VI. 기 타 필 요 한 사 항 : 없 음

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6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3. 10. 17

발 의 자 : 박용갑 의원외 17인

(운영위원장)

○ 수정이유

개정안과 같이 “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.”라고 개정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상정할 수 있는 긴급한 의안의 경우와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문안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○ 수정주요 골자

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 제57조의2(의안의 상정시기) 의안의 상정은 “집회공고일 이전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” 를 “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” 로 개정 발의되었으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어 “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” 라고 수정의결

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7조의2(의안의 상정시기) ----- “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원칙
으로 한다” 를 ----- “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” 로 한다.

제5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의안의 상정시기) 의안의 상정은 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.
다만, 긴급한 의안의 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첨 부 :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의장·부의장선거)①~④(생략) <u>(신 설)</u></p>	<p>제8조(의장·부의장선거)①~④(현행과 같음) ⑤제1항 선거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“○”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(무효투표)를 준용한다.</p>	<p>제8조(의장·부의장선거)①~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7조의2(의안의 상정시기)의안의 상정은 <u>집회공고일 이전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.</u> 다만, 긴급한 의안의 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</p>	<p>제57조의2(의안의 상정시기)----- -----<u>집회일 10일전까지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57조의2(의안의 상정시기)----- -----<u>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.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73조의2(시정에관한질문)①~⑥(생략) ⑦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<u>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</u>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73조의2(시정에관한질문)①~⑥(생략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제73조의2(시정에관한질문)①~⑦ (개정안과 같음)</p>